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335
----------	-------

발의연월일 : 2026. 1. 27.

발 의 자 : 천준호 · 박상혁 · 김주영
이상식 · 박용갑 · 한민수
문진석 · 김현정 · 윤종균
조계원 · 최혁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버스를 대폐차하는 경우 저상버스로 도입하여야 하지만 도로의 구조·시설 등이 저상버스의 운행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교통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노선버스회사와 교통행정기관이 도로의 구조·시설 등으로 대폐차시 저상버스 의무도입 예외노선을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지 않고 방치하여 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교통행정기관이 도로의 구조·시설 등이 저상버스의 운행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려는 경우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경우 도로 정비 및 우회노선 마련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 심사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

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제공할”을 “제공하고 교통약자의 승하차에 관한 사항을 승객에게 안내할”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휠체어 탑승공간에 적치물이나 방해물이 없도록 할 것

⑨ 교통행정기관이 제7항 단서에 따라 도로의 구조·시설 등이 저상버스등의 운행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⑩ 교통행정기관이 제7항 단서에 따라 도로의 구조·시설 등이 저상버스등의 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승인을 한 경우 해당 교통행정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도로 정비 및 우회노선 마련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견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9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같은 조 제7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등)	제14조(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등)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① -----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	-----
는 자(이하 “노선버스 운송사	-----
업자”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	-----
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교통약자에게 승하차 편의를	2. -----
<u>제공할 것</u>	- <u>제공하고 교통약자의 승하차</u>
	<u>에 관한 사항을 승객에게 안</u>
	<u>내할---</u>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4. <u>휠체어 탑승공간에 적치물이</u>
	<u>나 방해물이 없도록 할 것</u>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⑨ <u>교통행정기관이 제7항 단서</u>
	<u>에 따라 도로의 구조·시설 등</u>
	<u>이 저상버스등의 운행에 적합</u>
	<u>한지 여부를 심사하려는 경우</u>
	<u>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u>

<신 설>

따라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⑩ 교통행정기관이 제7항 단서에 따라 도로의 구조·시설 등이 저상버스등의 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승인을 한 경우 해당 교통행정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도로 정비 및 우회노선 마련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